
정오표 ver.02

2023.01.22.

을인원 서브노트
디자인보호법 연습

이준권 변리사

1. 올인원서브노트 및 진도별기출문제

[189번] [49-05-1]

문제 :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되면 그 관련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그 관련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 (X) [제91조] 제1항 단서

[346번] [50-08-1] ★

문제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X) [제121조] 제1항에 따라 “복수디자인은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다만, 제50회 시험에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지문이 명백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문이 맞는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오답으로 처리될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지만, 정답이 분명한 다른 지문도 존재한다면 그 지문을 정답으로 택하시길 바랍니다.

[378] [48-03-3]

문제 :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거나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X) [제42조] 한 벌의 물품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42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행규칙 별표5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470] [47-06-2]

문제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도면에 대해 보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O) [제48조] ④ 등록결정의 통지서가 발행되고, 직권재심사로 인해 등록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후의 심사관이 발행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할 때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보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73] [46-10-1] ★

문제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 (X) [제48조] ④ 등록결정의 통지서가 발행되고, 직권재심사로 인해 등록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후의 심사관이 발행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할 때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보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연도별기출문제

[2012년 35번]

문제 :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되면 그 관련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그 관련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 ② **확대대상디자인이** 관련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관련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물론 그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도 소멸한다.
- ④ 관련디자인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기본디자인권도 함께 양도 하여야 한다.
- ⑤ 관련디자인권과 기본디자인권은 합체되므로 관련디자인권이 소멸하면 기본디자인권도 함께 소멸한다.

정답 : 4번

[2008년 33번]

“ㄴ” 지문 : 토지에 설치되는 송전탑

정답 : ○ (송전탑이 반복 생산 및 운반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물품성을 만족한다)

[2011년 33번]

3번 지문 :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거나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 [제42조] 한 벌의 물품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42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행 규칙 별표5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2010년 36번]

문제 : 디자인보호법상 보정 및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2개)

지문 :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도면에 대해 보정할 수 있다.

정답 : 1번, 2번

[2009년 40번]

문제 :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 또는 보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개)

지문 :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없다. (×)

정답 : 1번, 2번

<지인디자인보호법 연습>

[146번]

4번 지문 : 2024년 5월 15일 丙이 **디자인 A의 일부를 구성하는 a**를 출원(ㄹ)하는 경우, 출원(ㄹ)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절된다.

[182번]

3번 지문 : 디자인등록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된 **이후에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설 : (○) 등록결정의 통지서가 발행되고, 직권재심사로 인해 등록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후의 심사관이 발행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할 때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보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오표 ver.01

2022.12.18.

을인원 서브노트
디자인보호법 연습

이준권 변리사

p4.

| | | |
|-----|---|---------------------------------------------------------------------------------------------------------|
| 유체성 | 無 | ㉠ 기체, 액체, 전기, 빛, 열, 음향 및 전파 등과 같이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은 물품성 결여 |
| | 有 | ㉡ 무체물인 경우에도 특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한 형상·모양·색채로 파악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유리관에 담긴 네온) ㉢ 글자체, 화상디자인 및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

p8.

[조립완구의 등록 가능성]

| 구분 | | 물품성 | 1디자인 1출원 | 비고 |
|----------------|--------|-----|----------|-------|
| 완성형태가 단일한 조립완구 | 구성각편 | X | (X) | |
| | 조립된 상태 | (O) | O | 등록 가능 |
|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 | 구성각편 | O | (O) | 등록 가능 |
| | 조립된 상태 | (O) | X | |

p101.

| 1. 복수디자인의 성립요건 | |
|--------------------------------------------------------------------------------------------------|----------------------------------------------------------------------------------------------------|
| ① 100개 이내의 디자인일 것 | 심사·일부심사대상물품을 불문하고 100개의 디자인까지 출원할 수 있다. |
| ② 도면은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할 것 | 각 디자인마다 독립한 권리가 발생하므로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해야 한다. 하나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도면에 2 이상의 디자인이 표현된 경우에는 제41조 제1항 후단 위반이다. |
| ③ 물품류가 동일할 것 |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류 구분 중 같은 물품류에 속해야 한다. |
| * 성립요건 충족의 경우, 제41조 및 제40조 제1항 위반으로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므로 등록 후 이의신청,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p102.

| | | |
|---------|----------|----------------------------------------------------------------------------------------|
| 신청 및 청구 | 제43조 제1항 |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디자인 청구할 수 있다. |
| | 제52조 제1항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원공개 신청할 수 있다. |
| | 제61조 제2항 |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 | 제80조 제1항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

p140.

| 2.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절차 | |
|---------------------|------------------------------------------------------------------------------------------------------------------------------------------------------------------------------------------------------------------------------------------------------------------------------------------------------------|
| 우선권 주장 | 디자인등록출원 시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연월일을 기재해야 하여야 한다(제51조 제3항). |
| 증명서류 제출 | ① 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1조 제4항). ②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기간은 원출원일이 아닌 분할출원시를 시점으로 기산한다(법 제50조 제2항 단서). |
| 번역문 제출 |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에 대한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③ 다만,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서류 중 도면의 기재내용이 디자인등록출원서상의 도면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어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

p238.

| | |
|---------|--------------------------------------------------------------------------------------------------------------------------------------------------------------------------------------------------------------------------------------------------------------------------------------------------------------------------------------------------------------------------------------------------------------------------------------------------------------------------------------------|
| 국제등록공개일 | ①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체약당사자 관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은 소정의 형식요건 심사를 거쳐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공개한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7조(1)). ② 따라서 “국제등록공개일”이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공개가 있는 날을 의미한다. ③ 다만, 출원인은 국제등록의 즉시 공개(immediate publication)를 신청(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7조(1)(i))하거나 국제출원일로부터 최장 30개월까지 공개의 연기(deferment of publication)를 신청할 수 있다(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7조(1)(ii)). ④ 체약당사자 관청(특허청)은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일부심사디자인은 국제등록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8조(1)(a)), 심사디자인은 12개월 이내(헤이그협정 공통규칙 제18조(1)(b))에 거절통지하여야 한다. |
|---------|--------------------------------------------------------------------------------------------------------------------------------------------------------------------------------------------------------------------------------------------------------------------------------------------------------------------------------------------------------------------------------------------------------------------------------------------------------------------------------------------|

069. (정답 추가)

[문제] 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O) [2005후2274]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425. (문제 수정)

[문제] 한 벌 물품의 디자인과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 각각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X) 비밀디자인 청구는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된 디자인과 구성 물품으로 출원된 디자인 각각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비밀디자인 청구할 수 있다.

426. (문제 오타)

[문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10. (정답 및 해설 수정)

[문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2 이상의 디자인을 1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제출된 우선권증명서류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해설] (O) [제50조]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0. 19.> (→ 개정법에 따라 원출원에 제출된 우선권 주장의 증명서류도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제출된 것으로 본다)

569. (해설 밑줄 추가)

[해설] (X) [제68조]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분(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069. (문제 수정)

甲은 커피 전문점으로부터 굿즈 제작을 의뢰받아 캠핑용 의자에 관한 디자인 A를 완성하였다. 이후, 甲은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 A에 대한 권리화를 위해 디자인등록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 甲이 등록받은 디자인 A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087. (해설 수정)

① |이 [심사기준] (부품의 경우) 부품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며, 완성품의 부분의 형태로 인정될 수 있고,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부분이 아니므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089. (문제 보기 수정)

④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111. (해설 수정)

⑤ |X| [제62조] 제35조 제2항에 위반된 경우이며, **이 경우 심사등록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만 일부심사등록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15. (해설 수정)

③ |X| [제48조]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235. (해설 수정)

② |X| [제95조] (제2항)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디자인권 상호 간에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⑤ |이 **부분디자인이** 선출원일 경우, 양자는 등록받고자 하는 범위 및 보호방법이 상이하여 모두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으나, 전체디자인이 부분디자인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면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